

「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」 설명회 자료 변경 전 · 후 대조표

(닥터헬기·현장이송팀, '26. 9. 11.(금))

□ 변경 전 · 후 대조표

페이지		내용	
원본	최종	변경 전	변경 후
51	54	- 협약을 통한 응급의료기관 (권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기관)에서 실습 수행 - 협약서 포함 내용: (필수) 실습 시간 *, (권고) 주차별 실습 교육과정 * 협약서에 실습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, 협약기관과 대학 간 공식 공문을 통해 실습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	- 협약*을 통한 응급의료기관 (권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기관)에서 실습 수행 - 협약서 포함 내용: (필수) 협약 기간, 실습 시간(휴게시간여부 명시), (권고) 주차별 실습 교육과정 * 협약 체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전년도 실적 증빙과 응급의료기관 승인 공문(계획서)으로 대체 가능 ※ 협약 주체는 기관장-병원장(또는 응급의료센터장)이 되어야 함
55	58	- 협약을 통한 소방서에서 구급차 동승을 포함한 실습 수행 - 협약서 포함 내용: (필수) 실습 시간, (권고) 주차별 실습 교육과정 * 편제 미완성 대학은 실습 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약서는 차기 심사 시 제출. ** 협약 체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전년도 실적 증빙과 소방 승인 공문(계획서)으로 대체 가능 ※ 협약 주체는 기관장인 소방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되어야 함	- 협약*을 통한 소방서에서 구급차 동승을 포함한 실습 수행 - 협약서 포함 내용: (필수) 협약 기간, 실습 시간(휴게시간여부 명시), (권고) 주차별 실습 교육과정 * 협약 체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전년도 실적 증빙과 소방 승인 공문(계획서)으로 대체 가능 ※ 협약 주체는 기관장-소방재난본부장, 소방서장(또는 소방서 담당 과장 등)이 되어야 함 ※ 편제 미완성 대학은 실습 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약서는 차기 심사 시 제출
67	70	유예기준 - 연도별 채용계획서 및 인력기준의 충족 예정 시점까지의 학과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유예기간으로 인정함. 단, 기간은 2028년 12월	유예기준 - 연도별 채용계획서 및 인력기준의 충족 예정 시점까지의 학과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유예기간으로 인정함. 단, 기간은 보건복지부

페이지		내용	
원본	최종	변경 전	변경 후
		31일을 초과할 수 없음	장관이 정하는 기간인 2028년 2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음
71	74	- 2026년 1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비자격 전임교원 중 지정심사 기준일 현재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응급구조학 전공 수업을 3년 이상 강의* 한 사람은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간주함. 유예기준 - 연도별 채용계획서 및 인력기준의 충족 예정 시점까지의 학과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유예기간으로 인정함. 단,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	- 2026년 1월 31일 이전에 응급구조학과 전임교원으로 채용되어, 해당 시점까지 응급구조학 전공 수업을 3년 이상 강의한 사람은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간주함 유예기준 - 연도별 채용계획서 및 인력기준의 충족 예정 시점까지의 학과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유예기간으로 인정함. 단, 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인 2028년 2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음
77	80	- (분반 교육생 수 적용) 정원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전학년이 분반으로 운영할 경우 수업계획서상 수강신청 가능 인원 중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교육생 수를 산정 - (자율전공학부 운영 대학) 응급구조학과 1학년 기초 수업 및 2~4학년 응급구조학과 수업 중 과목별 수업계획서 상 수강신청 가능 인원 중 최대인원	- (분반 교육생 수 적용) 정원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전학년이 분반으로 운영할 경우 분반별 인원 중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교육생 수를 산정 - (자율전공학부 운영 대학) 응급구조학과 1학년 기초 수업 및 2~4학년 응급구조학과 수업 중 과목별 (분반) 인원 중 최대인원
80	83	- 정원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전 학년이 분반으로 운영할 경우 수업계획서상 수강신청 가능 인원 중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교육생 수를 산정	- 정원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전 학년이 분반으로 운영할 경우 분반 인원 중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교육생 수를 산정
85	88	- (자율전공학부 등) 응급구조학과 1학년 기초 수업 및 2~4학년 응급구조학과 수업 중 과목별 수업계획서 상 수강신청 가능 인원 중 최대인원	- (자율전공학부 등) 응급구조학과 1학년 기초 수업 및 2~4학년 응급구조학과 수업 중 과목별 분반 인원 중 최대인원
91	94	- 기도유지마네킹 소아 1명당 1대, 영아 5명당 1대	- 기도유지마네킹 소아 15명당 1대, 영아 15명당 1대